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431
----------	-----

2023. 02. 27.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3. 1. 20. 이민석 의원 발의 (2023. 2. 9. 회부)

2.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관련 협의체 운영과 조합 해산 시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전 구성·운영되는 협의체 규모를 확대하여 참석자로 규정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손실보상 대상자 등 분쟁당사자를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 및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협의체 구성 관련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협의체 구성원을 참석 대상자까지 확대함(안 제67조)
- 나. 조합 해산 관련 근거 조항을 명시함(안 제75조, 안 제86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전, 구성·운영 되는 협의체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참석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시행자, 세입자, 손실보상 대상자 등의 분쟁당사자를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2023년 1월 20일 이민석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구성원(위원) : 공무원, 전문가 참석자 : 사업시행자, 세입자, 손실보상 협의 대상자, 감정평가업자, 구청장이 인정한 자	구성원(위원) : 공무원, 전문가, 사업시행자, 세입자, 손실보상 협의 대상자, 감정평가법인, 구청장이 인정한 자 (※참석자 규정 삭제)
구성원(위원) 수 : 5명 이상 ~ 15명 이하	구성원(위원) 수 : 10명 이상 ~ 30명 이하 (전문가 5명 이상 포함)

■ 개정조례안의 발의 배경

-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해당 자치구 소속 공무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만 구성되었기에 사업시행자,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²⁾,
- 최근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³⁾ 제117조의2(붙임1. 관련법령)가 신설('22.6.10.) 및 시행('22.12.11.)되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근거 조문이 상위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조례상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원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은 ▲협의체 회의 참석 대상자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참석자(사업시행자, 세입자, 손실보상 협의 대상자, 감정평가업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 '분쟁당사자')를 협의체 구성원(위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는 5명 이상 포함토록 하고,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은 현행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협의체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그동안 상위법률에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었지만,

4.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

④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천준호 12170, 12940, 13925, 김윤덕 12763, 송언석 13190, 김영호 13283, 전혜숙 14228) p.42

3) 법률 제18941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022. 6. 10., 일부개정] [시행 2022. 12. 11.]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⁴⁾을 근거로 조례⁵⁾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⁶⁾ 등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2013년부터 내부방침⁷⁾에 따라 구성·운영해오던 중, 2017년 현행 조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⁸⁾을 신설하였음. 당시 개정 조례의 입법 취지는 이해관계자의 대표자 선출 문제, 협의 결과 불수용, 개인별 협의 요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위원)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들이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한 것으로 사료됨.

- 실제 현장에서는 분쟁당사자를 유형별로(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현금청산자 등) 구분하여 협의체 회의를 한 번 개최할 때마다 2부제 또는 3부제 등의 방식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21년도 협의체 운영 결과를 보면 참석자(분쟁당사자)는 회의 1회당 평균 약 47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됨. (붙임2. 최근 2년간 협의체 운영현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또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1419, '13.2.1.)

8) 서울특별시조례 제640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의5(협의체 구성 및 운영) (생략) [본조신설 2017.1.5]

■ 협의체 회의 ‘참석 대상자 삭제’ 및 ‘구성원(위원) 확대’ (안 제67조제3항)

- 개정안과 같이 구성원(위원)을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한 것은 전문가 5명 이상(위원장 1명 포함)을 포함하고, 그간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석자로 배석했던 분쟁당사자(사업시행자, 세입자, 손실보상 협의 대상자, 감정평가업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를 실제 분쟁을 조정하는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위원) 상한을 정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구성원(위원)의 상한을 30명 이하로 정하면서 ‘위원이 아닌 분쟁당사자’의 참석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협의체 회의에 참석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수정의견 >

협의체	현행	개정안	수정안
구성원(위원)	공무원, 전문가	전문가, 공무원	공무원, 전문가
	-	분쟁당사자	분쟁당사자
참석자	분쟁당사자	없음(참석불가)	분쟁당사자(추가)

■ 전문가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성별 기준 준용

- 안 제67조제4항은 협의체 구성 시 제16조제3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6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협의체 구성 시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 개정안과 같이 협의체 위원 구성을 현행 참석자(사업시행자, 세입자, 손실보상 협의 대상자, 감정평가업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 ‘분쟁당사자’)까지 확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인 위원의 성별까지 균등하게 구성토록 강행규정화하게 되어 대상지별로 협의체 구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안은 조례 제16조제3항 단서조항9)에 의거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리 관련 (붙임3. 수정의견 참고)

-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 안 제67조제1항은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의 내용상 중복이 있으므로 조례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붙임1. 관련법령)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제6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제6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9) 조례 제16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구정장은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대상 자 또는 법 제52조제1항제4 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 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법 제117조 의2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 법 제117조의2에 따라 ----- ----- ----- ----- ----- ----- -----.</p>
---	---	---

- 안 제75조제9호 및 제86조제4호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합의 해 산’과 관련하여 인용할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 음.

개정일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조례 개정안	비고
'22. 6. 10.	조합해산 관련 (제86조의2 조합의 해산 신설)	제75조제9호(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86조제4호(자료의 제출)	

■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구성원(위원)을 확대하여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각종 분쟁 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분쟁당사자인 협의회 구성원(위원)이 분쟁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선출 된다하더라도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협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해당사자가 개인별 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최지현	02-2180-8216

[붙임1] 관련법령(p.9)

[붙임2] 협의체 운영현황(최근 2년간)(p.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신설)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시기, 협의 대상·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 2021년도 기준

	구역명	위원			참석자						
		소계	전문가	공무원	소계	사업 시행자	이주 대상자		손실보상 대상자	감정평가 업자	기타
							(주거)	(상가)			
1	구로 고척4	5	3	2	97	5	45	34	13		
2	영등포 1-13 (1차)	9	8	1	30	6	17	6	1		
	영등포 1-13 (2차)	9	8	1	19	6	13				
	영등포 1-13 (3차)	7	6	1	25	5	20				
3	강서 병화6 (1차)	6	5	1	91	3	75 (1부 45명 2부 30명)	10(3부)	2(3부)	1	
	병화6 (2차)	6	5	1	40	3	33 (1부20명, 2부13명)		3(3부)	1	
	병화6 (3차)	5	4	1	48	3	44 (1부26명, 2부18명)			1	
4	은평 신사1 (1차)	7	6	1	40	2	28		10		
	신사1 (2차)	7	6	1	14	2	6		6		
	신사1 (3차)	7	6	1	5	2	2		1		
5	중구 세운3-2 (1차-비대면)	6	4	2	27	4	18				5
	세운3-2 (2차)	6	4	2	25	4	15			1	5
	세운3-2 (3차)	7	4	3	36	3	30				3
	세운3-2 (4차)	6	4	2	28	3	25				
	세운3-2 (5차)	6	4	2	29	3	26				
6	동대문 제기4	5	3	2	27	2	25				
	제기4	5	3	2	24	2	22				
7	은평 갈현1 (1차-비대면)	6	5	1	125	2	65	31	25	2	
	갈현1 (2차-비대면)	6	5	1	120	2	67	25	25	1	
	갈현1 (3차-비대면)	6	5	1	140	2	30	78	29	1	
8	서초 방배13	6	5	1	28	7	6	5	7		3
	방배13	6	5	1	26	7	5	5	7		2
	방배13	6	5	1	22	8	5	5	4		
9	방배 산월곡1	6	5	1	89	3	85			1	
	산월곡1	6	5	1	32	3	28			1	

■ 2022년도 기준

	구역명	위원			참석자						
		소계	전문가	공무원	소계	사업 시행사	이주 대상자		손실보상 대상자	감정평가 업자	기타
							(주거)	(상가)			
1	세운3-2 (6차)	6	4	2	21	2	15				4
	세운3-2 (7차)	5	3	2	30	2	22				6
	세운3-2 (8차)	5	4	1	40	2	34				4
2	산월곡1 (3차)	5	4	1	30		29			1	
	산월곡1 (4차)	5	4	1	9				8	1	
3	한남8 (1차)	6	5	1		3				1	
	한남8 (2차)	6	5	1		3	313	147	94	1	
	한남8 (3차)	6	5	1		3				1	
4	신정1-3 (1차)	5	4	1	34	5	21 (1부)	3 (2부)	4 (3부)	1	
	신정1-3 (2차)	5	4	1	18	5	7 (1부)	2 (2부)	3 (3부)	1	
	신정1-3 (3차)	5	4	1	13	4	3 (1부)	1 (2부)	4 (3부)	1	
5	빙배13 (4차)	6	5	1	23	10	4 (2부)	4 (1부)	5 (3부)		
6	제기6 (1차)	4	3	1	13	2	11				
7	빙배14 (1차)	6	5	1	9	3	6				
	빙배14 (2차)	7	6	1	12	3	6	3			
	빙배14 (3차)	6	5	1	8	3	5				
8	월계동 487-17 (1차)	5	4	1	20	2	12	6			
	월계동 487-17 (2차)	5	4	1	17	2	10	5			
	월계동 487-17 (3차)	5	4	1	21	2	10	9			
9	수색8 (1차)	5	4	1	81	2	67 (3부)	10 (2부)	2 (1부)		
10	상계동 111-206 (1차)	5	4	1	104	3	93 (1부)	4 (2부)	3 (3부)	1	
	상계동 111-206 (2차)	5	4	1	52	3	31 (1부)	15 (2부)	2 (3부)	1	
	상계동 111-206 (3차)	5	4	1	39	3	26 (1부)	2 (2부)	7 (3부)	1	
11	금호 제16구역 (1차)	6	5	1	25	1	18	5		1	
	금호 제16구역 (2차)	6	5	1	16	2	14				
	금호 제16구역 (3차)	6	5	1	5	2	3				

< 수정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7조(협업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대상 자 또는 법 제52조제1항제4 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 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업체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 관리처분계 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p> <p>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 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 선하며 제16조제3항은 협의 체 구성 시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는 “협의체“로</p>	<p>제67조(협업체 구성 및 운영) ① -----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법 제11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한 협업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② ----- ----- 구성하며, 협의체에 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 열어야 한다. ----- ----- 협의체를 열 ---.</p> <p>③ ----- ----- 위원장을 포 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1호에 따 른 전문가를 5명이상 포함 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제1 호에 따른 전문가 중 선출한 다. <후단 삭제></p>	<p>제67조(협업체 구성 및 운영) ① ----- 법 제117조의2에 따 라 ----- ----- ----- ----- ----- ----- ----- ----- ----- ----- ② ----- ----- 구성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한다. ----- ----- ----- 운영할 -----.</p> <p>③ ----- ----- 위원장 1명 (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 서 호선한다)을 포함하여 1 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제2호에 따 른 전문가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5명 이상 포함하</p>

본다.

1. (생략)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④ 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1. 사업시행자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3.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

4. 법 제74조제2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

2. (현행 제1호와 같음)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사업시행자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

6. 법 제74조제4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할 때에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⑤ -----

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④ 협의체 회의에는 제3항제3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할 수 있다.

⑤ (개정안과 같음)

항을 협의 조정한다.

1. ~ 4. (생 략)

⑥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개최 하여 심사·조정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 협의·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⑥ -----
----- 열렸으나 -----

----- 열
어 -----.

⑦·⑧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⑥ -----
-----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

----- 개최
하여 -----.

⑦·⑧ (현행과 같음)